

파생상품 거래명세서
(금융회사등 제출용)

① 금융회사등(제출의무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거래기간
----------------	-----------	--------

[illegible]

$\frac{1}{2}$ $\frac{1}{2}$ $\frac{1}{2}$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① 금융회사등란: 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법인명 또는 상호를 적습니다.
-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금융회사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③ 거래기간란: 거래명세서 제출 대상기간을 적습니다.
- ④ 일련번호란: 계좌보유자별 계좌번호별로 거래일자가 빠른 순서부터 작성합니다.
- ⑤ 주민등록번호 및 ⑥ 성명란: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⑦ 계좌번호란: 파생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⑧ 계좌구분란: 파생상품을 거래한 계좌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일반계좌	특례 적용 계좌							
		분리과세				비과세, 면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뉴딜펀드	공모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투융자펀드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기타	
코드	A	B	C	D	E	F	G	I	J

8. ⑨ 파생상품 구분란: 파생상품 구분에 따라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선물	선도	스왑	콜옵션	풋옵션	차액결제거래(CFD)	기타
코드	61	62	63	64	65	66	69

9. ⑩ 거래구분란: 거래구분에 따라 아래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수량 증가(입고)						수량 감소(출고)					
	매수 (매도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 만기도래 포함)	기타	계좌간이체				매도 (매수미결제약정의 반대거래, 만기도래 포함)	기타	계좌간이체			
			본인	타인					본인	타인		
				양수	수증	상속				양수	증여	상속
코드	01	11	12	13	14	15	34	38	39	40	41	42

10. ⑪ 장내/장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거래소 개설 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01” 로 적고 그 외(장외)는 “02” 로 적습니다.

구분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코드	01	02

11. ⑫ 거래일자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한 결제일을 적습니다(예시: 체결일 2016년 3월 11일, 결제일 2016년 3월 12일 → 20160312).
12. ⑬ 국내/국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 및 그 밖에 국외에서 거래한 파생상품이면 코드 “9” 로 적고 그 외는 “1” 로 적습니다.

구분	국내 파생상품	해외 파생상품
코드	1	9

13. ⑭ 통화코드란: 국외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발행국가 또는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한 통화코드를 적습니다(예 USD, CNY 등).
14. ⑮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국외 파생상품인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의 소재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5. ⑯ 기초자산명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명을 적습니다(예시: 코스피200, 코스닥150, 금, 달러 등).
16. ⑰ 파생상품명(종목명)란: 파생상품의 한글 상품명(종목명)을 적습니다.
17. ⑱ 행사가격란: ⑨ 파생상품 구분이 옵션인 경우 행사가격을 적으며, 그 외는 공란으로 둡니다.
18. ⑲ 거래승수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승수를 적습니다(예시: 코스피200 선물·옵션 → 25만원,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 → 5만원).
19. ⑳ 약정수량란: 약정수량을 적습니다.
20. ㉑ 약정가격란: 계약체결 당시의 약정가격을 적습니다.
21. ㉒ 약정금액란: ㉑ 약정수량에 ㉑ 약정가격과 ⑲ 거래승수를 각각 곱한 값[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결제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외화로 계산 후 원화로 환산)]을 적습니다. 다만, 상기 ⑩거래구분이 매수/매도 중 매도미결제약정 체결 및 매수미결제약정 체결과 관련된 약정수량, 약정금액은 매수·매도시점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에 청산이 완료된 계약에 대응하는 약정수량, 약정금액만을 적습니다.
22. ㉓ 수수료란: 해당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11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을 적습니다.
23. ㉔ 수입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적습니다.
24. ㉕ 지출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